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96
----------	------

2021년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1. 5. 25.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1. 5. 31.

4. 상정일자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1. 6. 2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21. 7. 2.)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가 22억 5백만 원에서 32억 4천 7백만 원으로 10억 4천 2백만 원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이 3억 1천 3백만 원 순증함
-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을 21억 6백만 원에서 46.1% 수준인 9억 7천 1백만 원 증가한 30억 7천 7백만 원으로 변경하고,
- '랜선 나눔 캠퍼스'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비'를 21억 5천 2백만 원에서 17.8% 수준인 3억 8천 4백만 원 증가한 25억 3천 6백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396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2021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었음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22억 500만 원에서 32억 4,700만원으로 10억 4,20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수입」 금액이 당초 0원에서 3억 1,300만원으로 순증하였음
 - 예치금 회수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미집행(2억 5,300만원), 일반사업 8개 미집행(7억 2,400만원), 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등

(6,500만원)

- 기타수입 :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3억 100만원) 및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1,200만원) 사업 집행잔액

나. 또한 서울-지역 간 중학생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자 「2021년 랜선 나눔 캠퍼스」 사업 신규 추진하여 「비용자성사업비」 3억 8,400만원을 추가 편성함

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21억 600만원에서 30억 7,700만원으로 9억 7,100만원 증가하여 46.1% 변경되었음

라.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구 분	당초 (A)	변경 (B)	증 감 (B-A)
수 입 합 계	4,261	5,616	
일 반 회 계 금	1,000	1,000	-
이 자 수 입	56	56	-
기 타 수 입	0	313	313
예 탁 금 회 수	1,000	1,000	-
예 치 금 회 수	2,205	3,247	1,042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A)	변경 (B)	증 감 (B-A)
지 출 합 계	4,261	5,616	
비 용 자 성 사 업 비	2,152	2,536	384
기 본 경 비	3	3	-
재 무 활 동	2,106	3,077	971

3. 검토내용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 13억 5,5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10억 4,200만원)와 **기타수입** 3억 1,300만원으로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된 지출계획중 **랜선 나눔 캠퍼스** 3억 8,400만원과 **여유자금 예치** 9억 7,100만원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아울러 관련 기준은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①**시정현안 협업 기반 조성**이 당초보다 17.8%, 3억 8,400만원 증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나, ②**재무활동**은 당초보다 46.1%, 9억 7,100만원 증액되어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표 3-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 사업	당 초 (A)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계	4,260	5,615	1,355	31.8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2,151	2,535	384	17.8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2,151	2,535	384	17.8
서울타 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150	150	-	-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사업	225	225	-	-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000	1,000	-	-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300	300	-	-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295	295	-	-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11	11	-	-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100	100	-	-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	70	70	-	-
랜선 나눔 캠퍼스	-	384	384	
재무활동(기획조정실 협력상생담당관)	2,105	3,076	971	46.1
보 전 지 출	2,105	3,076	971	46.1
여유자금예치(국내협력계정)	2,105	3,076	971	46.1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협력상생담당관)	3	3	-	-
기본경비(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3	3	-	-
기 금 관 리 비	3	3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830('21. 6. 4)

○ 동 계정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기금운용부서가 지난 5월,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한 바,

- 지출계획중 세부사업인 **여유자금예치** △3억 8,400만원을 감액하고, **랜선 나눔 캠퍼스** 3억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출계획 한 것으로 정책사업인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은 당초보다 17.8% 증가하여 의회 의결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나 **재무활동**의 지출계획 변동비율은 당초보다 46.1%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부서가 의회의 의결대상으로 판단하여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제출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중 **랜선 나눔 캠퍼스**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

경비에 해당하고, **여유자금 예치**의 경우에도 기금의 조성액을 확대시키는 것으로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직접 연관된 '21년 5월, 제2차 기금운용 심의회 보다 이전에 개최된 '21년 2월,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결과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13억 5,500만원) 전액을 **재무활동**으로 증액하여 지출계획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통해 시의회가 본예산 심사시 의결한 당초 정책사업(재무활동) 규모보다 64.4% 증가된 지출계획을 의결하였다면 '21년 5월,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제1차 심의결과에 대해 의회로부터 의결·확정이 필요함에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즉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 재무활동 지출계획변경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명	기금운용 계획(당초) (A)	제1차 기금운용계획 심의 ('21년 2월 심의)			제2차 기금운용계획 심의 ('21년 5월 심의)			
		지출 계획액 (C=A+B)	당초 지출 계획대비 증가액 (B)	당초 지출 계획대비 증가율 (D=B/A)	지출 계획액 (E=C+F)	1차 기금운용 계획 심의 대비감소액 (F)	당초 지출 계획대비 증가액 (G=B+F)	당초 지출 계획대비 증가율 (H=G/A)
재무활동	2,105	3,460	1,355	64.4	3,076	△384	971	46.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830('21. 6. 4)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부대의결 : 「생략」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2021. 7.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396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2021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었음.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2,205백만원에서 3,247백만원으로 1,042백만원 증가하였고, 「기타수입」 금액이 당초 0원에서 313백만원으로 순증하였음.
- 예치금 회수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미집행(253백만원), 일반사업 8개 미집행(724백만원), 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등(65백만원)
 - 기타수입 :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301백만원) 및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12백만원) 사업 집행잔액
- 나. 또한 서울-지역 간 중학생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자 「2021년 랜선 나눔 캠퍼스」 사업 신규 추진하여 「비용자성사업비」 384백만원을 추가 편성함.
- 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2,106백만원에서 3,077백만원으로 971백만원 증가하여 46.1% 변경되었음.

라.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구분	당초 (A)	변경 (B)	증감 (B-A)
수입합계	4,261	5,616	
일전 반입회 계금	1,000	1,000	-
이자수입	56	56	-
기타수입	0	313	313
예원 금회 금수	1,000	1,000	-
예치금회수	2,205	3,247	1,042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A)	변경 (B)	증감 (B-A)
지출합계	4,261	5,616	
비용자 성비 사업비	2,152	2,536	384
기본경비	3	3	-
재무활동	2,106	3,077	97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대외협력담당관 대외정책팀 이지안(☎ 2133-6655)